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4
----------	-----

2025. 1. 2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1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오영탁 의원)

가. 제안사유

-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또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지킴이”가 “국가유산지킴이”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2024. 3.19.)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
- 이에,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

-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 진흥에 관한 조례

○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

-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안 제1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 2024. 5. 17.)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지킴이’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변경을 통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지킴이”란”을 ““국가유산지킴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지킴”을 각각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u> <u>활동에 관한 조례</u>	<u>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u> <u>활동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u> 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u>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u> 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u> ----- ----- ---- <u>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u> ----- ----- ----- -----.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산지킴이”란 ----- ----- ----- ----- -----.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u>문화재지킴이</u> 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	제3조(책무) ----- ----- ----- ----- ----- <u>국가유산지킴이</u> ----- ----- -----

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

--.

제4조(추진계획) ---- 국가유산지킴이-----

-----.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
국가유산지킴이-----

-----.

② ----- 국가유산지킴이-----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 국가유산지킴이-----

-.

제7조(홍보) ---- 국가유산지킴이-----

-----.

제8조(교육) -----
- 국가유산지킴이-----

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u>문화재지킴이</u>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 <u>국가유산</u> <u>지킴이</u>----- ----- --.